

합격생들이 0순위로 추천하는 마무리 요약서

2024 김종규 여다나 압축 선행정학



2024 김종규 여다나압축 선행정학을 펴내며

2021년 출간되어 탁월한 가독성과 알찬 내용으로 수험생들의 폭발적인 호응과 찬사를 받았던 여다나 압축 선행정학이 이번에 네번째 판인 2024판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여다나 압축 선행정학에 대한 수험생들의 사랑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합격생들이 0순위로 추천하는 책”

“공무원 수험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가독성이 높은 책”

“공부가 하고 싶어지는 책”

“펼쳐 보기만 해도 저절로 이해되고 암기되는 책”

“가독성이 예술인 책” 등등 수험생들의 평가는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수험생들의 이러한 호응과 평가에 부응하고 보답하기 위해 2024 여다나 선행정학은 다음과 같이 완성도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 2022 하반기와 2023 상반기의 신경향 출제경향을 완벽 분석 · 반영하였습니다
- 수험생들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여 가독성과 디테일을 더욱 높였습니다
- 최근 여러차례에 걸쳐 개정된 다수 법령들(「공무원노조법」,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주민조례발안법」, 「공공기관운영」 등)을 완벽하게 분석하여 특별자치도의 자치계층, 공무원 노조전임자의 지위와 보수 등의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 아울러 최근에 전면 개정 · 출간된 새행정학 3.0 등 최신 문헌의 내용을 심층분석하여 출제가능성이 높은 신이론들(공공가치관리론, 넛지이론, 귀인이론, 공공부문이론, 이해충돌이론, 변경된 통합재정범위, 재정준칙, 지능형정부, 주민자치회, 특별지방자치단체 등)을 대거 포함시켰습니다.
- 특히 최근에 개정된 윤석열정부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의 주요내용은 물론, 간혹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지방인사제도와 지방예산제도의 주요내용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앞서 출간된 2024 기필고 선행정학이 입문요약서라면, 2024 여다나 압축은 수험중반 이후 필요한 마무리요약서입니다. 수험후반기에 기출문제집 등과 함께 보시면 방대한 행정학을 빠르게 마무리·정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7. 24. 김중규

합격생 추천의 글

고민할 필요 없이 여다나 압축은 무조건 보셔야 합니다.

행정학은 워낙 광범위한 내용이기에 기본서만으로 반복하기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저 역시 처음에는 올인원 커리를 끝냈음에도 막상 기출문제를 풀면 낯설고 어렵다고 느껴졌고 그렇다고 다시 기본서를 보기에는 시간적 압박이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여다나 압축 교재를 구매하기로 결정하였고 큰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방대한 행정학의 내용을 단권화하여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가 있었고 최신 개정 사항까지도 잘 반영되어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합격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다나 압축을 통해 행정학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한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출문제도 합격에 필수적이지만, 최근 행정학의 난도가 어려워지는 추세이고 신유형의 문제가 계속 등장하기 때문에 골격을 탄탄하게 하고 트렌드를 빠르게 따라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다나 압축 교재를 베이스로 하여 각종 최신 이슈들을 차곡차곡 쌓아 나간다면, 아무리 어렵고 생소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빠르고 확실하게 합격을 하고 싶다면 정말 고민할 필요 없이 여다나 압축은 무조건 수강하셔야 합니다.

- 2023 9급 일반행정 합격 금동욱 -

방대하고 복잡한 행정학 이론과 개념들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 책

여다나는 행정학의 복잡한 이론과 개념들을 간결하면서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방대한 행정학의 핵심내용에 집중하며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학습을 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좋았던 것은, 챕터마다 탄탄한 체계적인 구성으로 학습 흐름을 이해하기 쉬웠다는 점입니다. 처음 행정학을 공부하면 그 양에 압도되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지 못하여 헤메는 경우가 많은데 여다나는 전반적인 구조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재시생의 경우, 계속 같은 과목을 공부하다보면 보통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은 소홀하게 되고, 기출에서 계속 틀리는 지엽적인 파트들만 반복해서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감을 잃기 쉬워집니다. 이때 여다나 교재와 강의를 통해 전체적으로 중요 내용을 압축 요약하면 흔들림없이 행정학의 감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출을 풀 때 부족했던 부분, 이론서만 봐서 전반적인 도식화가 안되어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 등의 약점을 파악하신 후 여다나에 단권화해서 완벽하게 보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다나 압축은 합격의 보증수표입니다.

- 2022 국가9급, 지방9급, 서울7급 합격 장유리 -

이 책의 내용과 순서

Ch 01 행정학의 기초이론

SUBJECT 01 행정의 본질

- 01 행정의 개념 · 23
- 02 공공재로서의 행정 · 24
- 03 행정의 변수 · 기능 · 과정 · 26

SUBJECT 02 행정과 환경

- 01 행정과 정치 · 28
- 02 행정과 경영 · 30
- 03 행정과 법 · 31
- 04 시민사회와 제3섹터 · 32
- 05 사회적 자본 · 34

SUBJECT 03 행정의 변천

- 01 국가와 행정의 변천 · 37
- 02 행정국가와 현대행정의 특징 · 38
- 03 신행정국가 · 39
- 04 진보주의 정부관과 보수주의 정부관 · 40
- 05 후기산업사회의 행정 · 41

SUBJECT 04 행정의 존재이유 – 시장실패와 대응

- 01 시장실패 · 43
- 02 정부규제 · 44
- 03 Wilson의 규제정치모형 · 47
- 04 행정지도 · 48

SUBJECT 05 행정의 한계 – 정부실패와 대응

- 01 정부실패 · 50
- 02 공공재의 적정 공급규모 · 52
- 03 감축관리론 – 작은 정부론 · 53
- 04 공공부문의 민간화 · 54

SUBJECT 06 행정의 지향과 가치

- 01 행정과 가치 · 57
- 02 행정이념의 우선순위와 상호관계 · 58
- 03 공익성 · 59
- 04 형평성 · 61
- 05 정의 · 62
- 06 합법성 · 능률성 & 민주성 · 63
- 07 합리성 · 64
- 08 효과성 · 65
- 09 가외성 · 66

SUBJECT 07 행정학의 특징과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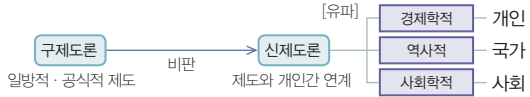
- 01 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 68
- 02 행정학의 접근법 · 69
- 03 행정학의 성립과 발달 · 70

SUBJECT 08 행정학의 주요이론

- 01 행정의 변천과 흐름 · 72
- 02 과학적 관리론 · 73
- 03 인간관계론 · 74
- 04 행태론 · 75
- 05 생태론 · 77
- 06 체제론 · 78
- 07 비교행정론 · 80
- 08 발전행정론 · 81
- 09 신행정론 · 82
- 10 후기행태주의 · 83
- 11 현상학 · 84
- 12 비판행정학과 담론행정 · 85
- 13 공공선택론(Ⅰ) – 기본가정과 특징 · 86
- 14 공공선택론(Ⅱ) – 주요 모형 · 88
- 15 신제도론 · 91
- 16 신공공관리론 · 93



이것이 핵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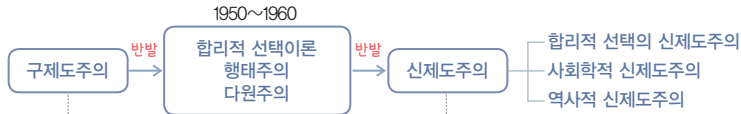


1 구제도론과의 차이

	구제도론	신제도론
제도의 개념	공식적인 법규, 정부조직	공유하고 있는 규범, 규칙
제도의 형성	외생적 요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	제도와 행위자 간의 상호작용으로 형성
제도의 특성	구체적 · 정태적 · 보편적 · 공식적 · 유형적	비공식적 · 상징적 · 문화적 · 동태적 · 무형적
접근법	거시주의(인간 불고려) 구-구정보공유	거시와 미시의 연계(인간 고려)
기술의 초점	제도의 기술 자체(인간의 행위나 사회현상 불포함)	제도라는 변수를 통해 인간의 행위나 사회현상, 정책환경, 국가정책 등 설명

↳ 내생변수로 취급

2 다원주의 · 행태주의와의 차이



연구의 범위	거시	미시	거시 + 미시
개인의 선호	×	○	△
제도의 역할	○	×	△
개인의 성격	사회화된 개인	원자화된 개인	제도화된 개인

↳ 과다사회화된

↳ 과소사회화된

● 신제도론의 특징

- ① 행태주의 등에 대한 반발
- ② 제도를 사회의 '구조화된 측면'으로 봄.
- ③ 제도를 독립변수인 동시에 종속변수로 봄.
- ④ 제도는 공식적인 것일 수도 있고 비공식적인 것일 수도 있음.
- ⑤ 정책 및 정책환경을 내생변수화하여 직접 분석
- ⑥ 제도와 행위자간 상호작용을 동태적으로 분석
- ⑦ 일단 형성된 제도는 일정기간 **안정성**을 지님(but, 변동가능성 인정) → 지속과 변동을 둘 다 설명

● 최근 행정이론 비교

	NPA	PCM	NPM	GOV	NPS	
	신행정론	공공선택론	신공공관리론	거버넌스론	신공공서비스론	
국가의 역할	적극적인 문제해결자 정부역할	국가의 역할 대폭 축소 · 부정 → 시장으로 전환	국가의 역할 대폭 축소는 아님 → 시장원리로 정부 개혁	국가와 시장, 시민사회가 함께 문제해결 → 공동생산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봉사서비스 → NPA의 계승	
방향잡기 & 노지기	구분 X	구분 X	방향잡기 ○ (정부) 노지기 X → 시장	방향잡기 ○ (정부) 노지기 △ : 함께	구분 X (불가능) * 정부가 모두	
행정이념	효율성	X	○	△ 1)	-	
	대응성	○	○ (선호)	X	○	
	민주성	○	△ (Ostrom) ↳ 민주행정패러다임	X	○	○ (민주적 행동)
	형평성	○	X	X	-	○ (약자 배려)
	공익성	○	X	X (과정설)	-	○ (실체설, 궁극목표)
	책임성	○	X	△ 2)	△ 3)	○ (다면, 복잡)

- 1) 거버넌스는 민주성과 책임성을 강조한 나머지 상대적으로 효율성을 소홀히 하지만 효율성을 결코 희생시키지는 않는다는 평가 있음.
- 2) 신공공관리론은 성과에 대한 책임은 강조하나, 대국민 · 민주적 · 공공책임성은 약화됨.
- 3) 거버넌스는 대국민 · 민주적 · 공공책임은 강조하지만 공동생산에 의한 모두의 책임은 무책임(분절화)으로 이어져 선거직을 통한 책임 확보라는 민주주의 정치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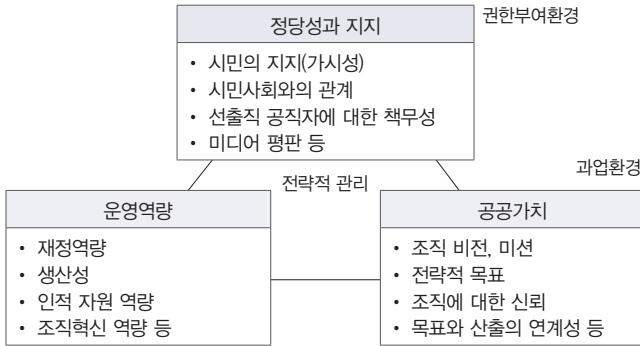
● 최근 행정이론의 변천(정부역할의 재정립)

[1970]	신행정론	미국 경동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치와 실천, 적실성 강조
	정부실패론	미국 정부가 격동기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정부불신 초래
	감축관리론	석유파동 이후 나타난 작은 정부론
	공공선택론	Ostrom의 미국 행정학의 지적 위기
[1980]	신공공관리론	정부불신으로 신자유주의 기조 속에서 민영화 추진과 정치행정이원론 재등장
	전문직업주의	직업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정치적으로 임명되는 공무원 수를 증가 → 업관주의 부활
	블랙스버그 선언	행정의 정당성과 직업관료제 옹호 → 행정재정립운동의 토대
[1990]	행정재정립론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하는 행정재정립운동(Refounding Movement) 등장 ① 스바라(Svara) : 기존의 정치행정이원론을 재해석하여 정책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 강조 ② 웬슬리(Wamsley) : 행정재정립론 ③ 굿셀(Goodsell) : 정부재창조보다 정부재발견 강조
	정부재창조론	① 오스본 & 게블러는 정부재발견보다는 정부재창조 강조 ② Clinton 행정부의 기업형 정부 개혁기반 : NPM을 적용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에 민간의 참여 강조
	뉴거버넌스	네트워크에 의한 민관협치
[2000]	신공공서비스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 고객중심적 행정에 대한 새로운 연구 경향
	탈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적 한계 극복 경향
	공공가치관리	공공가치실패론과 공공가치창출론

1 공공가치관리론

공공가치실패론 (B.Bozeman, 2002)	시장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본질적 가치(공익, 정의, 형평 등)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정부개입이 필요하다는 입장
공공가치창출론 (Moore, 1995)	민주적으로 선출되어 정당성을 부여받은 정부관리자들이 공공자산(정부조직, 정부예산 등)을 활용하여 시장에서는 공급될 수 없는 공공가치(공익, 정의, 형평 등)를 적극 창출·제공해야 한다는 이론 → 행정의 정당성 위기를 극복하고 공공가치 창출을 위하여 전략적 삼각형 모형 제시

● 전략적 삼각형 모형



2 넛지이론

- (1) 의의 → 인지오류와 행동편향으로 인한 비합리적 의사결정
- ① 행동적 시장실패 해결을 위한 정부의 부드러운 개입 강조
 - ② 구성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 위한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 도덕적 설득 X, 경제적 유인 X, 강압적 규제 X
 - ③ 탈러(Thaler)와 선스타인(Sunstein)에 의해 2008년 이후 급부상(2017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2) 넛지이론의 핵심

- ① 정부는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더 나은 결정을 도와주는 선택설계자
- ② 간접적이고 유도적인 방식의 정부개입으로 촉매적 정책수단을 강조
- ③ 설정된 기본값(디폴트 옵션)를 그대로 따르려는 행동편향을 이용한 전략적 정책설계 중시
- ④ 엄격하게 검증된 증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 중시 : 행동경제학의 특성
- ⑤ 행동적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급진적 점증주의에 기초

→ 외부효과에 의한 전통적 시장실패론과 달리 내부효과에 의하여 발생 → 인지오류와 행동편향 등

- ⑤ 새만금개발청, 행복도시건설청, 국민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 : 중앙행정기관화 → but 설치근거는 개별법
- ⑥ 보건복지부에 질병관리청 신설 및 보건복지부 · 산업통상자원부에 복수차관제 도입 ↳ 국문산기복과외(복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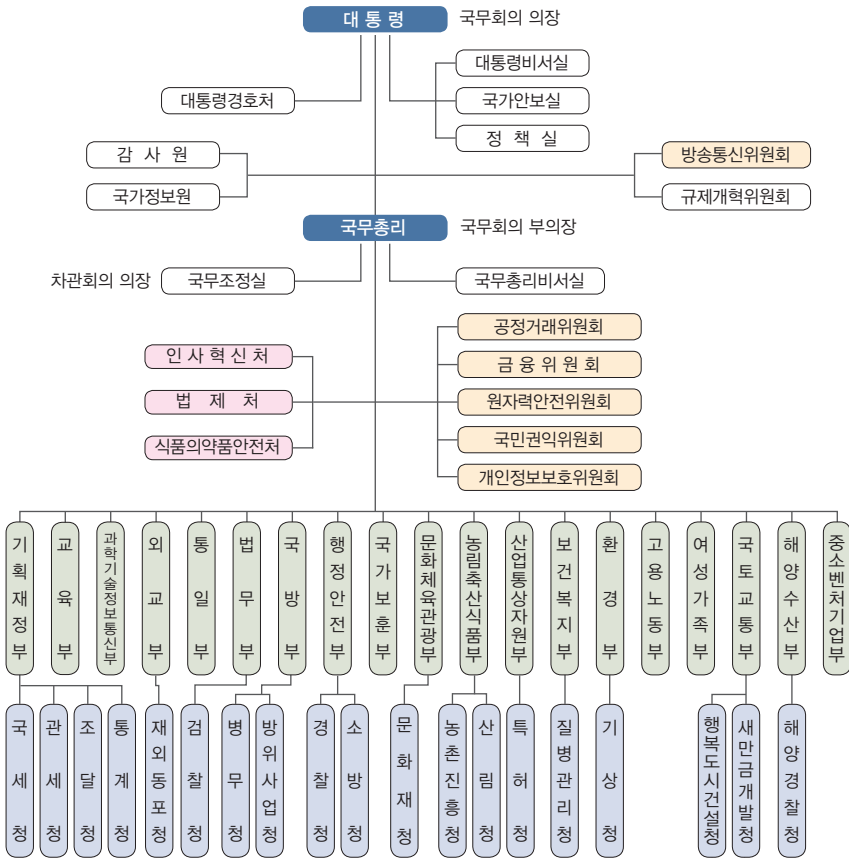
(2) 윤석열 정부

18부 4처 18청 6위원회 7복수차관 → 19부 3처 19청 6위원회 7복수차관

- ① 국가보훈처 → 국가보훈부로 승격
- ② 외교부에 재외동포청 신설

3 우리나라 정부조직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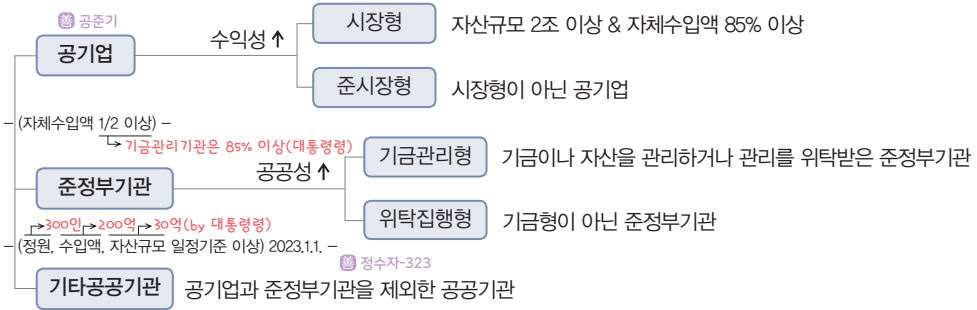
- 중앙행정기관 : 19부 3처 19청 6위원회 (2023.6.5. 시행)
("정부조직법, 상) ■ ■ ■ ■



■ 국관조통

2청·6위원회는 정부조직법에 의해 직접 설치된 기관은 아님

3 공공기관의 유형 구분 - 실정법상 분류



4 공공기관의 유형별 기관 사례

[2023.1. 현재]

공기업	시장형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공항공사(인천국제, 한국),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남부발전(주) 등 5개 발전회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주)강원랜드 등(총 13개)	← 에너지 관련기관
	준시장형	한국마사회, 대한석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조폐공사 등	← SOC 관련기관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 돈·자산 관련기관
	위탁집행형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에너지관리공단,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도로교통공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관광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 취약계층 관련기관
기타 공공기관	항만공사(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1),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사발전재단 등		

1) 공공기관 지정기준 변경(2023.1)으로 4개 항만공사가 공기업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었다.

5 공공기관의 임원과 임명권자

	이사회 의장	감사 위원회	기관장	상임 이사	비상임 이사
공기업	선임 비상임이사	설치 의무	대통령이 임명	기관장 임명	기재부장관 임명
준정부기관	기관장	설치 임의	주무기관장이 임명	기관장 임명	주무기관장 임명

주의 [공공기관이 될 수 없는 기관]

-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 KBS, EBS
- 자치단체가 설립·관여하는 기관
- 상호부조기관

4 특징과 한계

- ① 실적제와의 상충
- ② 행정의 전문성·생산성 저해
- ③ 재사회화(공직입문 후 신념 변화) 불고려 (1차 사회화 O, 2차 사회화 X)
- ④ 역차별 우려: 할당제 강요로 기회의 공평 저해 → 사회적 분열과 갈등 요인
- ⑤ 외부통제 무력화: 국민참여나 협력적 통치(거버넌스) 등 저해 → 국민주권원리에 반함
- ⑥ 경험적 입증 부족: 소극적 대표가 적극적 대표로 이어진다는 보장 없음
↳ 임용전 사회화 ↳ 임용후 행태
- ⑦ 구성론적 대표의 기술적 한계
- ⑧ 특정집단への 악용: 적극적 대표를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집단이기주의 우려
- ⑨ 정부규모 팽창 소지 → 감축관리·신공공관리론(NPM) 등 생산성·효율성이 강조되는 정책기조와 충돌

5 우리나라 대표관료제(균형인사정책)

- ① 양성채용목표제 ② 장애인 의무고용제 ③ 저소득층 할당제 ④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 ⑤ 이공계출신 채용목표제 등

● 다양성 관리

- ① 의의: 구성원들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 조직의 성과를 제고시키려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인사관리 전략
- ② 종류 ↳ 최근 강조
 - 내적 다양성: 성격, 가치관 등의 차이
 - 외적 다양성: 출신, 성별, 인종, 학력 등의 차이
- ③ 접근법
 - 멜팅팟 접근(소극적 접근): 이질성 해소·동화
 - 샐러드볼 접근(적극적 접근): 이질성 유지·지원 ↳ 최근 강조
- ④ 전략: 균형인사정책(대표관료제), 일과 삶의 균형, 맞춤형 관리 등

④ 주의 [대표관료제의 양면성]

- ① 사회화 전제 O, 재사회화 고려 X
- ② 내부통제 강화 O, 외부통제 무력화 O
- ③ 공직 내에 민주적 가치 주입 O, 협치·국민주권주의 X

● 다양성의 구성요소

가시성	성별 연령(세대) 인종 민족 장애(육체적)	직업, 직위, 직급 숙련도 전문성 언어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배경, 혼인여부 성격, 사회화경험 종교, 동기요인 성적 지향	교육수준(학력) 노동지위 자녀여부 가치관 장애(정신적)
높음		높음
낮음	변화가능성	높음

(5) 문재인 정부(2017~2022)

- ① 중소기업기업부 신설
- ② 국민안전처 및 미래창조과학부 폐지
- ③ 해양경찰청을 해양수산부 소속 외청, 소방청을 행정안전부 소속 외청으로 독립
- ④물관리기능 환경부로 일원화
- ⑤ 행복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국민권익위, 개인정보보호위 :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화
- ⑥ 보건복지부에 질병관리청 신설 및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복수차관제 도입

(6) 윤석열 정부(2022~)

- 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 ② 외교부에 재외동포청 신설

3 정부별 주요 행정개혁 내용

	조직	인사	재무	지방
김대중 정부 (1998~ 2003)	① 행정서비스헌장제도 (1998) ② 책임운영기관제도 (1999)	① 개방형직위·공모직 위제도(1999) ② 부패방지법 제정 (2002) ③ 연봉제 도입, 국장급 이상(1999)	① 국고금관리법 제정 (2003)	①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촉진법(1999) ② 주민감사청구제도 (1999) ③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1999)
노무현 정부 (2003~ 2008)	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2007)	① 공무원노조제도 (2006) ② 고위공무원단제도 (2006) ③ 총액인건비제도 (2007)	① 자율편성제도(2005) ② 성과중심의 재정운용(2007) ③ 국가재정운용계획(2007) ④ 디지털예산회계정보시스템 (2007) ⑤ 프로그램예산제도(2007) ⑥ 발생주의 & 복식부기(2008)	① 지방분권특별법(2004) ② 주민투표제(2004) ③ 주민소송제(2006) ④ 주민소환제(2007)
이명박 정부 (2008~ 2013)	① 정부조직 통합·개편(부총리 폐지)	① 부패방지권익위법 (2008)	① 국가회계법(2009) ② 남녀평등예산제도(2010) ③ 조세지출예산제도(2011)	①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2008) ② 주민참여예산제도 의무화 (2011)
박근혜 정부 (2013~ 2017)	① 정부 3.0 추진 ② 미래창조과학부 및 국민안전처 신설			①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2013)
문재인 정부 (2017~ 2022)	① 중소기업기업부 신설 ② 해양경찰청과 소방청 분리·독립		① 국민참여예산(2018)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2018)
윤석열 정부 (2022~)	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 ② 외교부에 재외동포청 신설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023)

이명박 정부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2008)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박근혜 정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3)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문재인 정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2018)	자치분권위원회
윤석열 정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023)	지방시대위원회

2 지방분권 정책방향

(1) 지방분권 추진원칙(노무현 정부 이후~)

- ① 선분권 · 후보완의 원칙 : 일단 분권하고 문제점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보완
- ② 보충성의 원칙 :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사무 배분
- ③ 포괄성의 원칙 : 단편적 이양이 아닌 중 · 대단위사무 중심 이양
↳ 기초단체가 처리 가능한 사무를 상급정부가 관여해서는 안됨

● 보충성의 원리

소극적 의미(전통)	기초공동체 또는 기초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상급정부나 상급공동체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적극적 의미(현대)	상급정부 또는 상급공동체가 기초정부 또는 기초공동체가 일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윤석열정부) -2023.6.9.제정, 2023.7.10.시행-

1) 개요 및 방향

- 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통합
- ② 대통령소속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방시대위원회”로 통합
 - ③ 대통령 소속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책의 조정, 관련 국정과제의 총괄 · 조정 · 점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도록 함.
 - ④ 위원회는 5년 단위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및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2) 지방자치분권

- ① 권한이양 및 사무구분체계의 정비 등
 - ② 국가는 「지방자치법」 제11조에 따른 사무배분의 기본원칙에 따라 권한 과 사무를 적극 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시 · 도 또는 시 · 군 · 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
 - ③ 국가는 권한과 사무를 자치단체에 포괄적 · 일괄적으로 이양하기 위한 필요한 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함.

㉔ 국가는 자치단체에 이양한 권한과 사무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법」과 중복되었던 중전 사무배분의 원칙은 삭제

- ②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사무 중 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자치단체가 담당하도록 하여야 하고, 자치단체의 기능과 유사·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
- ③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노력
- ④ 자치경찰제 실시 :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를 실시해야 함.
- ⑤ 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성 강화 : 국가는 지방세의 비율이 확대되도록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을 확보하여야 함.
- ⑥ 지방의회의 활성화 : 국가는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 확대 등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 ⑦ 주민참여의 확대 :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주민소환·주민소송·주민조례발안제를 보완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하여야 함.
- ⑧ 주민자치회의 설치 등 :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으며, 자치단체 사무의 일부를 자치회에 위임·위탁할 수 있음.

3) 지역균형발전

- ①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근거 신설 : 대규모 투자를 지역에 유치·지원하기 위하여 지정·고시하는 특별지역
- ②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설치 등 :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운영

4) 대도시에 대한 특례

- ①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대도시에 대해서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둘 수 있음.
 - ㉑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구 30만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로서 면적이 1천제곱킬로미터 이상인 지방자치단체 포함)
 - ㉒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
- ② 특례시의 보조기관 : 특례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함.

5)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 ① 특별시·광역시 : 존치
- ② 도 : 존치하되, 기능과 지위에 대해서는 따로 법률로 정함
- ③ 자치구 : 인구과소 자치구는 통폐합
- ④ 시·군 : 국가가 통합을 지원, 통합자치단체에 대한 특례(예산 및 지방교부세 등) 부여
- ⑤ 읍·면·동 :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 중심 →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전환

영리행위 제한	강함	약함 ¹⁾	1) 지방자치단체장에 비하여 지방의원들의 영리행위금지업무는 포괄적이지 않음 ① 자치단체장 : 해당 자치단체 관련 영리사업 종사 금지 ② 지방의회의원 : 소관 상임위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겸직금지규정	있음 ²⁾	있음 ³⁾	2) 주요 공직에 대한 겸직 금지 3) 개정 「지방자치법」(2022.1.13. 시행)에서 겸직금지 대상 명확화
정당공천	인정	인정 ⁴⁾	4) 기초의회의원도 2006년부터 비례대표제 및 정당공천 인정

(2) 상호 간의 권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에 대해 갖는 권한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장에 대해 갖는 권한
①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권 ② 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③ 의안발의권 → 소집권 X ④ 임시회 소집요구권 * 의회해산권은 없음	① 서류제출 요구권 ②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③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 응답권 ④ 예산·결산 승인권 * 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결의권은 없음
But,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에 대한 불신임은 가능 ←	

● 우리나라의 주요 지방인사제도

(1) 지방인사행정기관

1) 시·도 인사위원회

- ① 의의 : 광역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설치, 독립된 합의제 지방인사행정기관
- ② 기능 : 공무원총원계획, 임용시험 실시, 승진심의, 징계의결 등
- ③ 구성 : 16인~20인의 위원, 위원장은 부단체장, 정당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음.

2) 시·도 소청심사위원회

- ① 의의 : 광역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설치, 인사위원회와는 별도로 설치
- ② 기능 : 지방공무원 소청심사, 구속력 있음, 소송제기에 앞선 거쳐야 하는 의무적 전심절차
- ③ 구성 : 16인~20인의 위원, 위원장은 호선, 지방인사위원회 위원과 정당원·지방의회의원은 위원이 될 수 없음.

(2) 지방공무원의 구분

1) 경력직

- ① 일반직 : 기술·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종사, 직군·직렬별로 분류
- ② 특정직 : 공립의 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 공무원(소방직은 2020.4. 국가직화)

2) 특수경력직

- ① 정무직 : 선거로 취임하거나 지방의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 또는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
- ② 별정직 : 비서 등 보좌업무

(3) 기타 지방인사의 운영

- ① 공직분류 : 직위분류제 원칙
- ② 임용기준 : 실적주의 원칙, 균형인사제 가미
- ③ 개방형직위 : 공직내외에서 적격자 선발(단, 대상직위 총수의 10% 이내로 국가직보다 좁음, 지정시 행정안전부장관과의 사전협의제는 폐지)
- ④ 공모직위 : 당해기관 내·외부의 공무원(국가공무원 포함)중에서 선발

3 지방재정 평가지표

재정규모(재정력)	자주재원 + 의존재원 + 지방채	지방재정자립도 등을 반영하지 못함
재정자립도 ¹⁾	(지방세 + 세외수입) / 일반회계 총세입 (자주재원) ← (자주재원 + 의존재원 + 지방채) ←	자립도가 높다하여 재정이 건전하다 할 수 없음(재정 규모, 세출의 질, 실질적 재정상태, 정부지원규모내역 등을 알 수 없기 때문)
재정력지수	기준재정수입액 / 기준재정수요액	지수가 클수록 재정력이 좋음. 보통교부세 교부기준
재정자주도 ²⁾	일반재원 / 일반회계 총세입	차등보조금 교부기준, 재정자립도 미만영이 한계

- 1) 재정자립도는 자주재원(자율적으로 조달가능한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자주재원이 늘어날 때보다 의존재원이 줄어들 때 더 많이 높아짐
 2) 재정자주도는 일반재원(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한 재원)이 차지하는 비율로 지방교부세의 자주재원적 성격을 인정하자는 입장

● 재원의 종류와 재정지표 간의 관계

재원	지표	재정규모	← 일반재원의 비율	← 자주재원의 비율
			재정자주도	재정자립도
보조금 증가		↑	↓	↓
교부세 증가		↑	↑	↓
지방세 증가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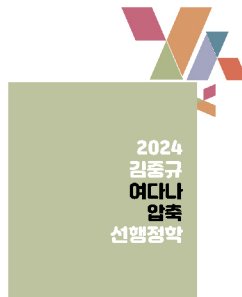
주의

[재정력 지표 쟁점]

- ① 자주재원 / 전체재원 : 재정자립도 O, 재정자주도 X
- ② 일반재원 / 전체재원 : 재정자립도 X, 재정자주도 O
- ③ 재정자립도 : 자주재원이 늘 때보다 의존재원이 줄 때 더 많이 증가
- ④ 재정자주도 : 지방교부세의 자주재원적 성격 인정

4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방향

- ① 지방재정보다는 국가재정 위주 : 지방재정의 국민총생산 등에 대한 비율 저조
- ② 국가와 지방간 사무분담과 경비분담의 불일치
- ③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과세주권 결여 : 지방세 법정주의
- ④ 소득과 소비 관련 과세는 주로 국세, 재산 관련 과세는 지방세 → 지방재정 본질적으로 취약
- ⑤ 세입분권지수가 세출분권지수에 비하여 낮음 : 재정갭을 지방교부세가 충당 → 세입분권지수 향상이 긴급
↖ 재정자립도 ↗ 재정자주도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www.kaspa.co.kr TEL. 02-532-5280~1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시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3년 7월 27일
펴낸이 김중규
펴낸곳 (주)카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A동 103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FAX. 02-532-5315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ISBN 979-11-92405-36-0

값 30,000원

